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실태 및 개선방안

2019. 3.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실태 및 개선방안

Ι

제도 및 조사개요

- (제도개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95년) 되면서 보호구역 內
 학교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 금지
 - ※ 現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강화) '11년부터는 旣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도 폐지· 이전 의무화(과거 : 폐지·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u>이전하여야 한다.</u> ※ 종전: 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위 규정에도 불구, 일부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국적 실태 조사 실시 ('18.12~'19.1月)
 - ※ 조사내용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개소수·면수), 폐지계획 수립여부·애로사항

현황 및 실태

□ 불법 노상주차장 현황

- ◇ (규모) 폐지·이전해야 할 노상주차장은 총 380개소/7,522면
 - ※ 보호구역 內 전체 노상주차장은 총 911개소 / 18,259면으로 나타남
 - * 학교 주출입문 (정문)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도로 상 노상주차장 (현행법상 유지가능) 포함
- (지역) 경기 101개소(26%)/2,394면(32%), 인천 75개소(20%)/1,367면(18%), 대구 61개소(16%)/1,073면(14%), 서울 53개소(14%)/596면(8%) 순
 - 서울, 경기, 인천에 총 229개소(60%)/4,357면(58%)으로 **수도권 집중**
 - 경기를 제외한 **道지역**은 총 32개소(8%)/542면(7%)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 불법 노상주차장이 없는 시·도도 3곳(광주, 전남, 제주)이 있음

※ 전국 시·도별 현황

시·도	보호-	구역 內 노상주	차장	불법 노상주차장 * 주출입문 직접연결 도로				
	(시·군수)	(개소수)	(면 수)	(시·군수)	(개소수)	(면 수)		
합 계	97	911	18,259	62	380	7,522		
서울	10	124	1,688	5	53	596		
부산	14	173	3,386	11	38	895		
대구	8	184	3,212	7	61	1,073		
인천	8	119	2,545	7	75	1,367		
광주	3	4	116	-	-	-		
대전	5	48	1,456	4	7	379		
울산	2	14	402	2	13	276		
경기	16	147	3,385	11	101	2,394		
강원	3	6	207	2	3	156		
충북	2	10	227	2	3	44		
충남	5	8	263	2	2	50		
전북	4	14	243	2	2	26		
전남	4	6	97	-	-	-		
경북	5	7	144	2	2	19		
경남	6	32	595	5	20	247		
제주	2	15	293	-	-	-		

- (용도분석) 공영주차장이 210개소(55%)/4,521면(60%), 거주자 전용이 142개소(37%)/2,579면(34%), 기타(구획선 등)가 28개소(7%)/422면(6%) 順
- (관리주체) 지자체 직접 관리 250개소(66%)/4,872면(65%), 지방공기업 위탁관리 105개소(28%)/2,056면(27%), 나머지 25개소(6%)/594면(8%)은 주민자치기구 등을 통한 자율관리 중인 것으로 분석
- **(설치시기)** '95년 이전 설치 14개소(4%)/610면(8%), '96~'10년 설치 91개소(24%)/2,030면(27%), '11년 이후 설치 19개소(5%)/381면(5%) ※ 나머지는 매우 오래전부터 운영되는 등 사유로 설치연도 확인불가 회신
 - ⇒ **설치연도**가 **'96년 이후**로 확인된 110개소(29%)/2,411면(32%)은 지자체 차원의 명백한 **법위반**

② 폐지계획 수립 현황

- (수립현황) 폐지·이전해야 할 노상주차장 총 380개소 / 7,522면 중 폐지계획이 있는 주차장은 41개소(11%) / 465면(%)에 불과
 √ 충남은 불법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100% 폐지계획 수립
 - ※ 폐지 계획이 없는 노상주차장 현황

시·도	불 * 주	법 노상주차 출입문 직접연결 !		폐지계획 미수립			
	(시·군수)	(개소수)	(면수)	(시·군수)	(개소수)	(면수)	
합 계	62	380	7,522	56	339	7,057	
서울	5	53	596	5	47	566	
부산	11	38	895	10	37	885	
대구	7	61	1,073	7	51	890	
인천	7	75	1,367	7	69	1,332	
대전	4	7	379	4	7	379	
울산	2	13	276	2	13	276	
경기	11	101	2,394	10	98	2,349	
강원	2	3	156	2	3	156	
충북	2	3	44	2	2	40	
충남	2	2	50	-	-	-	
전북	2	2	26	2	2	26	
경북	2	2	19	2	2	19	
경남	5	20	247	3	8	139	

- 미수립 사유
 - 대다수는 폐지시 **주차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민원이 우려**되고 폐지에 따른 대체주차장 공간 등 대안 부재
 - **※ 실제 주민반발 사례** ('18.9.11. 부산 KNN 보도 인터뷰 내용)
 - ▷ 보도명 : 말뿐인 보호구역, 법규위반 노상주차장 수두룩
 - **부산 연제구**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계획**을 알린 것에 대한 주민 반응
 - √ (주민1) 30년 넙게 주차해온 곳을 갑자기 폐지한다고 하면 어쩌란 말인가요!
 - √ (주민2) 지금도 2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앤다고 하면 이사가라는 맙입니까?
 - 해당지역 주차난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을 제거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불법 주차**가 **예상**되어 유지
 - 사용자 장기배정 (연단위) 상태로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유지 필요
 -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 없다고 판단

③ 지자체 건의사항

- 심각한 **주차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 **폐지 유예기간*** 필요
 - *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후 단계적 폐지 요구
- **일률적 폐지는 지양, 위험성이 적은 곳***은 **예외** 규정 필요
 - * 보호구역 內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라도 보·차도가 분리되는 등 안전 한 통행로가 확보된 구역은 예외로 규정 필요
-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에는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고려사항

- ① 노상주차장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해제할 가능성
- ② 어린이집, 유치원을 타 지역으로 이전 요구 집단 민원 우려

개선 추진방안

목표

'20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內 불법 노상주차장 "제로화"

추진 방향

- ▶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예외 없이 폐지·이전 ※ 최장 2년까지 기한 구분설정 및 실행, 폐지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 ▶ 지역특성 및 주차 수요를 고려, 주차환경 등 개선 지원
- ▶ 공정하고 일관된 단속 집행으로 국민 수용성 제고
- ▶ 학교,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

구 분

주요 내용

1. 폐지 이전

- 1-1. 폐지 기한 설정 및 기한 내 폐지·이전 추진(행안부/지자체)
- 1-2. 폐지 전까지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 배치 (지치)

세부 추진

과제

- 2. 시설 개선
- 2-1. 보호구역 주차특별관리 시범지역 육성·전파(행안부)
- 2-2. 노상주차장 폐지와 연계,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 (행안부/지자체)
- 2-3.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차공간 조성사업과 연계강화 (국토부/지자체)
- 3. 단속 관리 강화
- 3-1. 단속용 CCTV 등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확대 (행안부/지자체)
- 3-2.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정보공개(행안부/공단)
- 3-3. 노상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 명확화(경찰청/행안부)
- 4. 홍보 참여 확대
- 4-1.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홍보 (행안부/지자체)
- 4-2.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행안부/지자체)

1.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 ◇ 보호구역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예외 없이 모두 폐지 또는 이전
- ◇ 지역 여건을 고려. 폐지 기한 구분 설정 및 실행
- ◇ 폐지 전까지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 배치·운영

□ 예외 없이 모두 폐지·이전

- **보호구역** 內 초등학교,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법 규정에 따라 모두 페지 또는 이전
- 既 설치된 주차장 폐지에 대한 예외 단서 "특별한 사유"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전혀 위험성이 없는 경우"로만 한정·운영(경찰청 협의 추진)
 ※ 주민 민원, 불법 주차 예상에 따른 폐지 실효성 문제 등 사유는 인정 불가

□ 페지 기한 구분 설정 및 실행

○ 380개소를 **즉시 폐지, 1년 이내, 2년 이내** 폐지로 구분 설정

구분	기한 설정기준	대상물량		
즉시 폐지 (3개월 이내)	•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보호구역내 주차장 ※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보호구역 48개소	약 50개소 (13%)		
1년 이내 폐지 (19년)	・非 거주자용이거나(or) 초등학교 주변인 경우	약 275개소 (72%)		
2년 이내 폐지 ('20년)	·거주자용이면서(and) 초등학교 외 시설 주변인 경우	약 55개소 (15%)		

○ 해당 지자체에서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폐지 기한 설정·제출, 행안부는 반기별 이행상황 관리(미이행 기관에 대하여는 감찰 의뢰 및 감사 청구)

□ 폐지 전까지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 배치·운영

○ 노상주차장 폐지 이행 완료 전까지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 배치** ※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

2. 주차 공간 확충 등 시설개선

-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특별관리 시범지역 육성·전파
-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연계, 불법 주정차 중점 관리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차 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특별관리 시범지역 육성·전파

- (사업목적)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이전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 및 주차 수요를 고려한 시범지역 육성
 - 지역별·도시규모별 성공모델 창출, 전국적 확산 유도
- (사업내용) 주차공간 확충, 주차환경 정비·개선, 주차문화 조성 등
 - 주차공간 재정비를 포함, 지역 생활권 교통환경 개선과 연계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주차공간 확충	•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노상주차를 노외주차로 전환) • 지역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을 활용,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환경 정비·개선	•불법 주정차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CCTV 확충, 정비 •주차장 안내시스템 도입, 실시간 주차장 정보안내 제공 •무인 주차관리체계 도입 및 주차장 공유 활성화
주차문화 조성	• 학교,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주차환경개선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주민에 의한 불법 주정차 방지 캠페인 등

- **(추진방법)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시도별 1~2개)
 - 추진계획 수립(4~5월), 대상지역 수요조사(6~7월),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8~9월), 시범사업 지역선정(10월), 개선 추진('20년~)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또는 별도재원 확보·지원(총 20여개소 선정) / 1개소당 단위 사업비 5~10억원(지원재원 2.5~5억, 자체재원 2.5~5억원)

□ 노상주차장 폐지와 연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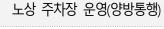
- 보도·보행로 설치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보도 보행로 설치
 - 지자체별 폐지계획에 따라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시설개선 추진

<노상주차장 폐지 계획이 없는 보호구역의 보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보도 있는 보호구역	보도 없는 보호구역	비고
계	339	220 (65%)	119 (35%)	
초등학교	131	124 (95%)	7 (5%)	
유치원	118	64 (54%)	54 (46%)	
어린이집·보육시설	85	31 (36%)	54 (64%)	
기타	5	1 (20%)	4 (80%)	특수학교

<노상 주차장 폐지 후 통학로 확보 사례(경기 안산 화정초등학교)>



노상주차장 폐지 후 통학로 확보(일방통행)





-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선정시, 기존 노상 주차장 폐지 및 이전 여부 확인 후 예산 배분
 - 기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미이행 시·군·구는 다음 연도 사업비 배분시 제외 또는 감액 조치
 - ※ 지자체 보호구역 지정시에도 노상주차장 삭제 및 이전 여부 확인 조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차 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강화

-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환경개선 중앙부처 공모사업***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될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연간 국비 650여억원 지원, 70여개소 개선)
- **지자체 특별회계**를 활용한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우선 선정**
 -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강화

-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주정차 금지 표시 등 설치 확대
- ◇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설치관련 규정 명확화

□ 단속용 CCTV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 노상주차장 폐지 후, 효율적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 단속용 CCTV 설치 확대(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과제)
 - 중·장기적으로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 설치(지자체 수요조사결과 반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계	2,323	55,752	431	10,344	665	15,960	530	12,720	397	9,528	300	7,200
행안부(지원재원)	2,323	27,876	431	5,172	665	7,980	530	6,360	397	4,764	300	3,600
지자체(자체재원)		27,876	451	5,172	003	7,980	550	6,360	397	4,764	300	3,600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도색 및 표지판 설치
 - 노상주차장 폐지와 병행 도색 및 표지판* 설치(그 외 구간 우선 이행)
 - * 황색 복선 노면표시 및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안내표지판

□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ㅇ 부처 홈페이지 등에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현황 정보 공개***
 - * 행안부·교육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운영현황, 폐지계획 및 기한 등 게시
- 어린이보호구역 위치정보,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에 대한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상 주차장 폐지 이행실태 관리 강화
- ※ 도로교통공단에서 '19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 예정 / (해외 사례) 일본 국토교통성은 각 시구정촌이 작성한 통학로 교통안전프로그램을 집계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



□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설치관련 규정 명확화

- 기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및 이전 예외 단서 재검토**
 - 예외 단서 존치 필요성, 막연한 규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에 대한 명확화 방안 등 종합 검토
-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의 불법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연구**
 - * "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설치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자의적 해석 여지 / 관련 전문연구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19.1.)

4. 홍보·참여확대

-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불법성 홍보(기관 홈페이지, 기획보도 등)
-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스마트폰 활용)

□ 보호구역 시설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노상주차장 불법성 홍보

- 홍보 포스터(배너) 제작,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 ※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노상주차장별 폐지 계획 및 기한 게시
- 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실태**에 대한 **기획기사** 보도(주요언론사)
 - ※ 지역 언론·방송에도 정보 제공/ 현 실태·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 국민 공감대 형성 유도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의 일환으로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추진**
 - ※ 지자체별 단체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안전다짐대회 행사 실시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스마트폰 활용)

- 주정차 위반 차량, 보호구역 주변 시설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스마트 폰을 활용한 신고 활성화 추진
 - 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 공익신고 적극 유도
 - ※ 현재 국민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시(위반사진 포함) 과태료 부과 가능, 안전신문고 앱도 동일 기능 탑재 시행 예정('19.4.17)

행정사항

〈 행정안전부 〉

- 홈페이지 게시용 **홍보물**(배너) 제작·게시 ('19.3.~4월)
-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방안 **협의** (*19.3.~4월)
- 무인 단속용 CCTV 설치계획 수립 ('19.3.~4월)
- 보호구역 **주차특별관리구역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19.4.~5월)
- 연구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연구과제 추진 협업** ('19.5.~12월)
- **'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계획 수립** ('19.10.~12월)
- 반기별 지자체 **이행상황 관리** ('19.~'20년)

〈 지방자치단체 〉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계획 수립·추진 ('19.3월~)
- 노상주차장별 **폐지기한 설정**, **폐지·이전 계획 제출** (*19.3.~4월)
- **지자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방안 협의** ('19.3.~4월)

붙임 1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계획

	추 진 과 제	관련기관	기 한
1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1-1. 노상주차장별 폐지기한 설정·제출	지자체	'19.3.~4월
	1-2. 폐지 완료 이전까지 등하교 시간 안전요원 배치	지자체	'19~'20년
	1-3. 반기별 이행상황 관리	행안부	'19~'20년
2	 주차환경 개선 지원		
	2-1.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특별관리 시범지역 육성·전파	행안부	'19~'20년
	2-2.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연계	행안부	'19~'20년
	2-3.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주차환경개선) 반영 협의	행안부/국토부	'19~'20년
	2-4. 지자체별 재원마련 계획 수립(특별회계 등)	지자체	'19~'20년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강화		
	3-1. 단속용 CCTV 설치 추진	지자체/행안부	'19년~
	3-2. 불법 노상주차장 정보공개 추진	행안부/도로교통공단 등	'19년下
	3-3. 관련 법규정 재검토 - 폐지·이전 예외단서/불법 노상주차량 판단 명확화	행안부/경찰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9년下
4	주차문화 개선		
	4-1. 불법성 홍보 배너 제작, 기관 홈페이지 게시	행안부	'19년下
	4-2.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행안부/경찰청/교육부 등	'19.3월

붙임 2 사도별 전체 현황 (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

시·도	보호구역	역 內 노싱	수차장	불법 * 주출'	노상주 입문 직접연결		폐지계획 미수립			
·	(시·군수)	(개소수)	(면수)	(시·군수)	(개소수)	(면수)	(사군수)	(개소수)	(면수)	
합계	97	911	18,259	62	380	7,522	56	339	7,057	
서울	10	124	1,688	5	53	596	5	47	566	
 부산	14	173	3,386	11	38	895	10	37	885	
대구	8	184	3,212	7	61	1,073	7	51	890	
인천	8	119	2,545	7	75	1,367	7	69	1,332	
광주	3	4	116	-	-	-	-	-	-	
대전	5	48	1,456	4	7	379	4	7	379	
울산	2	14	402	2	13	276	2	13	276	
경기	16	147	3,385	11	101	2,394	10	98	2,349	
강원	3	6	207	2	3	156	2	3	156	
충북	2	10	227	2	3	44	2	2	40	
충남	5	8	263	2	2	50	-	-	-	
전북	4	14	243	2	2	26	2	2	26	
전남	4	6	97	-	-	-	-	-	-	
경북	5	7	144	2	2	19	2	2	19	
경남	6	32	595	5	20	247	3	8	139	
제주	2	15	293	-	-	-	-	-	-	

불임 3 어린이보호구역 법적근거 및 지정절차

□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부령) 제3조

□ 지정대상

연번	지정대상	시행시기
1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100513
1	- '초・중등 교육법' 제38조 및 제3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995년
2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100인 이상)	2005년
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100인 이상)	2011년
4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2015년

※ 대상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 지정절차

지정신청 (어린이 해당시설의 장)

П

▶초등학교 등이 해당 시장 등에게 지정 신청

지정여부 조사 (시장 등)

Û

- ▶ 시장 등이 지정여부 조사
 - 주변 도로의 보행·자동차 통행량, 신호기·안전표지 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 주변 도로의 어린이의 수 등
 -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지정 (지방경찰청 등)

- ▶ 시장 등은 지정, 관리 필요시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 ▶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보호구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으로 지정
- ※ 해제는 해제사유 발생*시 시장등이 관할 지방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제
 - * 폐원 또는 폐교,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시설의 장이 요청

불임 4 어린이보호구역 주차특별관리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어린이 공원 지하공간 활용 등 별도 공영주차장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추진(국토부 주차환경사업과 연계 등)

불임 5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설(안)



참고 주차장 유형별 예시



참고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 수렴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19.2.22. 14~16시/행정안전부 별관청사 대회의실(804호)
- (참 석 자) 지자체 총 20명(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남 지역) ※ 전문가 2명(도로교통공단 오주석 선임연구원, 교통연구원 임재경 연구위원)
- (주요내용)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토론

□ 주요의견

< 전문가 >

- 노상주차장 운영지점이 **사고발생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지자체 에서 실제 폐지·이전이 어렵겠지만 **필요한 정책**임
 - ※ 노상주차장과 근접한 곳에 불법 주·정차도 따라 생기는 측면 고려 필요
- 대체주차장 마련시 접근성 고려, 소규모로 여러 곳으로 분산,
 삭선 면수보다는 많은 수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

- **주차 문제**는 **민원의 강도**가 매우 강한 바, 일선 지자체가 겪게 될 어려움 우려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단독주택 밀집 구도심의 경우 **대체부지 마련 어려움**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어도 실제 사업이 어려울 것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노상주차장 이전이 어려운데, 해당 시설은 보호자가 등하원시 동행 하는 점 고려하여 정책 추진 필요
 - ※ 등·하원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주차 허용 방안도 검토 필요
- 대체 주차장 조성 예산 반영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폐지 시기와 물량을 정할 필요 ※ 대체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도 고려